

스마트폰 수험총서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응급의료법

국시원, 응급구조사

- ☆ 1시간 40분 완성, 고득점 가능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도서명 : 응급의료법

ISBN : 979-11-94286-81-3

발간일 : 2025-06-19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0,500원



응급의료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p11)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p1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p22)

제5장 재정(p56)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p73)

제7장 응급구조사(p114)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p146)

제9장 보칙(p186)

제10장 벌칙(p197~204)

[약어]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보건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부장관

부령은 보건부령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 시군구

장관등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위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시도위는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센터는 응급의료지원센터

중앙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장비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2조

1. 목적

1) 법은

-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등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

2) 영은 법, 규칙은 법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응급환자

- 질병, 분만, 사고/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 즉시 응급처치 받지 않으면,
-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 환자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 상기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있는 자

나. 응급의료

-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 응급환자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

다. 응급처치

- 응급의료행위의 하나
- 응급환자 기도 확보, 심장박동 회복, 생명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방지를 위한 긴급 처치

라. 응급의료종사자(이하 종사자)

-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나 자격 범위내 응급환자에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구조사

마. 응급의료기관

- 의료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권역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이하 전문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이하 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바. 구급차등

-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이송수단

사.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 운송자, 지원센터

아. 응급환자이송업

- 구급차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 이송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5조

1.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 받을 권리

-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같다

2.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 모든 국민은

가) 응급상황시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 안내 등 기본 대응방법을 알

권리

- 국가등은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조치

나) 국가등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해 알 권리

3.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 누구든지

· 응급환자 발견시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

4.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 다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으면
-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함

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응급처치

- 종사자
- 선박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 가진 자

나)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자격 범위내 한 응급의료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6~12조

1.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
-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 요청받거나 응급환자 발견시 즉시 응급의료 해야 하며 사유없이 거부/기피못함

2. 응급환자가 아닌 자 에 대한 조치

가) 의료인은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가능

- 응급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
내용/과목 추천

나)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요구시
즉시 제공

3.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종사자는

·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구조,
응급처치하고 진료에 최선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 실시

4.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가. 종사자는

1) 다음 이외는 응급환자에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 받음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 없음
-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 지체시 환자 생명 위험, 심신상 중대한 장애

2)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에 설명하고 동의 받음
- 법정대리인이 동행 않은 경우 동행한 자에 설명 후 응급처치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

나. 내용

-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응급 검사/처치 내용
- 응급의료 받지 않는 경우 예상결과나 예후
-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다. 절차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에 의함
- 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 없는 응급환자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응급환자에
반드시 응급의료 필요시 의료인 1명 이상
동의 얻어 응급의료 가능

5. 종사자는 사유없으면 **응급의료 중단 금지**

6. **응급환자의 이송**

가. 의료인은

1)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 할 수 없다고 판단시 지체없이 적절한 응급의료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2)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 알선/제공

- 연락이나 준비 할 수 없으면 지원센터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송수단 알선/제공

나. 의료기관 장은

- 1) 이송할 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 제공,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다음 의무기록 제공
 - 응급환자진료의뢰서
 -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 방사선 필름 사본, 진료에 필요한 자료
- 2) 환자에 이송비용 청구
 - 당해 의료기관 구급차 사용시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 청구

7.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